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3182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태욱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문훈성, 임경섭

변론 종결 2024. 11. 14.

판결 선고 2024. 12. 19.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24. 3. 4. 체결한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4. 3. 12. 접수 제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23. 9. 27.경 4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약정하고, C은 2023. 9. 27.부터 2026. 4. 말까지 매달 1,200만 원을, 2026. 5. 말에 나머지 6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C은 2023. 10. 5.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증서 2023년 제79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1).

다. 그 후 C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공증사무소에서 2024. 2. 16.자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2)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24. 3.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4. 3. 12. 접수 제26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C과 피고의 매매예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은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고, 이로써 C은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C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가 C에 대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그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정현

별지

1)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4억 원이 단순 투자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2024. 3.경 C의 예금액은 3,426원인 반면 채무액은 1,748,240,000원 정도이고, 다른 재산은 없다.